#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92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복기왕·전현희·이정문

서삼석 · 김용만 · 이병진

홍기원 · 임호선 · 유동수

민형배 • 문진석 • 정준호

조승래 • 노종면 • 박정현

김영호 · 김영배 · 박희승

김문수 · 전재수 · 한정애

황정아 · 안태준 의원

(239])

# 제안이유

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. 천문, 항공, 우주,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·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.

미국, 영국,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2018

년 국가연구데이터 공유·활용전략을 수립하고, 2019년 연구데이터관리계획(DMP) 시범 적용,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(DataON) 구축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음.

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(공동관리규정)으로 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.

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는수준에 머물러 있음. 그 정확한 규모마저 확인되지 못한 채 연구데이터가 잊히거나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적 손실임.

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. 그러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한 것임.

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,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 연구개 발기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·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 더불어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, 표 준화, 품질관리, 보안관리, 활용촉진, 연구자 권리보호,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·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 이터 공유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 주요내용

- 가. 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로부터 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국가연구데이터 성과를 적절히 보호·관리하여야 하고, 연구자는 그 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가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함(안 제5조).
- 나. 정부는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·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 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 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라.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・관리・제공・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・운영하고,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제공・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・운영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- 마. 국가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,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기간 동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며,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(안 제13조).
- 바.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, 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14조 및 제15조).
- 사.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, 별 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16조).
- 아. 국가연구데이터의 상호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,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,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18조 및 제20조).
- 자.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, 전문기관 에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).

#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데이터 기반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확산을 촉진하여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및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국가연구개발사업"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2. "연구개발과제"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.
-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 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 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  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- 4. "국가연구데이터"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관찰, 실험, 조사,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- 5. "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"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성·가공·제작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국가연구데이터가 공공의 연구자산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·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・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

터를 등록·공개하여 국가연구데이터가 연구자 상호 간에 원활하게 공유·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,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한 소속 연구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국가연구데이터를 충실히 수집·생성·가공하여 생산하고, 소속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원활하게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·처리·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연구데이터의 이용자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과 윤리를 준수하고,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권리의 보호 등)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  -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를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로 표시하는 등연구자의 국가연구데이터 생산에 대한 성과를 적절히 보호·관리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는 자신이 생성 또는 가공한 국가연구데이 터의 사용・수익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・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정 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④ 다수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비중에 따라 각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권리를 갖는다.
- ⑤ 연구개발기관 등으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 등을 통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취득하여 활용하는 자는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의 출처와 이용내역을 이용조건에 따라 표시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.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·활용 등에 관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 대하여 「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성 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해당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# 제2장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의 추진체계

- 제6조(기본계획) ①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확산을 촉진하고,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
- 2.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,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
- 3.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. 확산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4. 국가연구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- 5. 국가연구데이터 기반 연구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
- 6.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- 7.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·운영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·활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수립된 기본계획 등 데이터에 관련된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·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시행계획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

- 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·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)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  -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- 3. 국가연구데이터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·운영되는 국가연구데이터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 - 4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
  - 5.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
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국가연구데이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.
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국가연구데이터센터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(이하 "국가연구데이터센터"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
  - 2. 국가연구데이터 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및 제공
  - 3.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·개발·구축 및 관리
  - 4.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표준화 기술 등의 개발 및 지원
  - 5.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교육 지원
  - 6. 국내외 국가연구데이터 유관 기관 단체와의 협력

- 7.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데이터센터(이하 "전문연구데이터센터"라 한다)를 지정・운영할 수 있다.
- 1.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 등록 ·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
- 2.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
- 3. 그 밖에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 한 사항
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⑥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전문연구데이터센터의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① 그밖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전문연구데이터센터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조(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·관리및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한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) ① 국가연구데이 터센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연구데이터 통

합플랫폼(이하 "통합플랫폼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·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(이하 "전문플랫폼"이라 한다)을 구 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통합플랫폼은 전문플랫폼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,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통합플랫폼의 효과적인 구축・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전문연구데이터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

제12조(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

연구개발기관에게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취득·생산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"연구데이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0조에 따라 국 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연구데 이터관리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생산·보존 및 관리하고, 그 결과를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) ① 연구개발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지정되는 등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비공개 기간 동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를유보할 수 있으며,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,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4조(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호환성 및 활용성 제고,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간협력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」 및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  - 1.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
  - 2.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공동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위한 조사· 연구·개발 등 표준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연구개발기관 및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,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요구할 수 있다.
 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 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와 협력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- 1. 국가연구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
- 2. 국가연구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
- 3. 국가연구데이터 품질 인증
- 4.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의뢰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6조(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 구개발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국가연구데이터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·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는 별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·시행 실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,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,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촉진

- 제17조(국가연구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원칙) ① 모든 국가연구데이터 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개방 및 공유되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용이하게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·관리 기관을 파악할 수 있고,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며, 이용 목적에 따라 상호 유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촉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또는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해당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  - ④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국가연구데이터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

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활용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인식개선 및 제도정비)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, 재산적 가치 및 권리 보 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가연구데이 터가 효율적으로 생산·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 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) ①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 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· 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2조(국제협력 촉진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테이터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인력의 교류 및 공동연구

등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전문데이터센터 터에게 관련 네트워크의 구축 등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,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보칙

- 제23조(비밀유지의무)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제8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업무
  - 2. 제9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전문연구데이터센터의 업무
  - 3. 제2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·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
- 제2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데이터의 생산·활용 등에

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8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 회 위원 및 제24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26조(벌칙)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